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연번	안건명	소관부서	소관위원회
1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전추진단	자치행정위원회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책기획과	"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4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	"
5	성남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쇄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법무과	"
6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앙도서관	"
7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업지원과	경제환경위원회
8	성남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	"
9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
10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11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위원회
12	성남시 중·장기청소년 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	"	"
13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도시계획과	도시건설위원회
1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의회사무국	본회의
1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	체육청소년과	"
16	성남시 장사시설(장묘문화타운) 건립대책 특결위원회 구성 결의안	영생관리사업소	"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	성남시 시정연구 모임 스마트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안전평가 및 팀별평가의 기준 분리(제6조) ○ 안전평가 :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 팀별평가 : 안전점수, 연구의 충실성 및 노력정도, 연구결과의 시정반영여부, 팀원의 참여율 노력정도, 시민사회 소통 및 의견반영 나. 국 주무과장의 당연직 평가위원을 분야별 과장으로 변경(제7조) 다. 동점 또는 최우수, 우수, 장려에 해당하는 팀이 2개팀 이상일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제7조) 라. 평가위원회 의결정족수 및임기신설(제7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임 기 - 공 무 원 : 직책의 재직기간 - 민간위원 : 2년(연임가능)	비전추진단	자치행정 위 원 회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2	성남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성남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한 위임규정 없이 현행 각 구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경제교통과),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주민생활지원과)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등 업무를 구청장에게 사무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사무위임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신설(노인장애인과)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 6층이하 2,000㎡이하 (동 조례에서 정한 주택과 건축허가 면적 준용) • 시정명령 등 - 과태료 부과·징수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정책기획과	자치행정위원회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개관 및 중원구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신청사 시설물 관리인력과 종량제봉투 판매 및 공급업무 직영운영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대비를 위한 정원책정 사항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총 정원 : 2,515명(변동없음) – 집행기관의 정원 : 2,480명(변동없음) – 의회사무국의 정원 : 35명(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3조) • 일반직 정원조정 : 1,994명(변동없음) • 별정직 정원조정 : 10명(변동없음) – 6급 : 2명 → 3명(증1명) – 7급 : 8명 → 7명(감1명) • 기능직 정원조정 : 501명(변동없음) ○ 인력(직급)조정에 따른 연간추계 소요 인건비 (단위 :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계</th><th colspan="3">별 정 직</th><th rowspan="2">비 고</th></tr><tr><th>소계</th><th>6급</th><th>7급</th></tr><tr><td>인 력</td><td>-</td><td>-</td><td>1</td><td>△1</td><td></td></tr><tr><td>인건비</td><td>+11</td><td>+11</td><td>+66</td><td>△55</td><td></td></tr></table>	구분	계	별 정 직			비 고	소계	6급	7급	인 력	-	-	1	△1		인건비	+11	+11	+66	△55		정책기획과	자치행정 위 원 회
구분	계	별 정 직			비 고																				
		소계	6급	7급																					
인 력	-	-	1	△1																					
인건비	+11	+11	+66	△55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4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고용직공무원인 방법원 폐지에 따른 방법수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삭제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고용직공무원인 방법원 폐지에 따른방법수당 조항을 삭제(안 제3조) ○ 고용직공무원인 방법원 폐지에 따른 방법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 삭제 (별표 3)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위 원 회
5	성남시 주민의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함 (안 제1조 및 제2조)	예산법무과	”
6	성남시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2007. 11. 6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 조례의 명칭정립 ○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상향조정 ○ 운영위원회의 전문인사 범위를 조정 ☐ 주요골자 가. 명칭 변경(안 제1조) ○ 현 행 : 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 ○ 변 경 : 성남시정보문화센터	중앙도서관	”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7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도서관의 자료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조정 (안 제17조제2항) ○ 전체 장서보유 기준의 100분의 5 → 100분의 7 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인사 범위 조정 (안 제18조제2항) ○ 현 행 : 문화계·교육계 등 전문인사 ○ 변 경 :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 제안이유 ○ 자가공장 확보를 위한 아파트형공장 분양(구입) 자금 및 이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관내 기업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 기술혁신 촉진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며 아파트형공장 구입(분양)자금 지원대상 범위를 법률에서 정한 입주대상으로 개선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관련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항변경 및 내용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다고 중소 기업청에서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아파트형공장 구입(분양)자금 지원대상 범위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주대상으로 개선함.(안 제8조)	기업지원과	경제환경 위 원 회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8	성남시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 용자대상업체중 성남상공대상, 성남 중소·벤처 기업대상 수상업체,재해업체 등은 이자차액 보전율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업체의 용자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용자기간을 4년이내 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 (안 제9조) □ 제안이유 ○ 성남시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국제화를 추진 하고,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제정된 본 조례가 중앙 및 경기도 조례 폐지 및 시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형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여 별도의 국제화추진 협의회 구성,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함 □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기업지원과	경제환경 위 원 회
9	성남시고문공인 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가.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는 행정기구 확대에 따라 고문공인회계사 자문사항이 날로 증가하여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위촉 가능인원을 3인이내 에서 5인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나. 현재 분기별 300,000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수당을 성남시 고문 변호사 및 고문노무사 수당과 같이 월 200,000원 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회 계 과	”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0	성남시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주요골자 가.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인원조정 (안 제2조) ○ 현행(3인이내) ⇒ 개정(5인이내) 나.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수당조정 (안 제4조) ○ 현행(분기 300,000원) ⇒ 개정(월 200,000원) □ 제안이유 ○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 ·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을 반영한 조례의 관련규정개정 ○ 공무원 여비의 지급구분(안 제3조) • 여비 지급을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 적용 ○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안 제4조) •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규정을 준용	회 계 과	경제환경 위 원 회
11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 제안이유 ○ 2007.12.31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허가를 경기도 청소년과에 신청하였으나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예문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개정 권고 요구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함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 위 원 회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 이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정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함. □ 주요골자 가. 수익사업 (안 제5조) 현행 :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안 제7조의1) 신설 : ①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보고 (안 제12조제3항) 신설 : 재단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라. 임원의 선임제한 (안 제19조의1) 신설 :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마. 임원의 직무 (안 제20조 제4항 제3호) 현행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및 <u>시장에게 보고</u> 변경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및 시장에게 보고 후 주무관청에 보고 바. 직원의 임면 (안 제22조 제1항) 현행 : 사무국장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5년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자 변경 : 사무국장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 5년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자 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 사. 의결 정족수 등 (안 제29조) 현행 : ②이사는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변경 :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신설 : ③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이사회 소집 (안 제31조 제3항) 현행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삭제〉 자. 해산 (안 제42조) 현행 :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의 사유로 재단을 해산할 경우(파산 및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2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 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성남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자립 기반지원을 위한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설치에 따라 운영관리를 전문성이 확보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탁근거 및 관련법규 ○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기본법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3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13조(청소년쉼터의 설치기준 등) ○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나. 위·수탁자 선정 ○ 위 탁 자 : 성 남 시 ○ 수 탁 자 : 공모에 의한 민간 위탁 다. 위탁대상 ○ 시설명 :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여자)쉼터 ○ 위 치 : 미 정 라.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 위 원 회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3	성남시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 제안이유 ○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건설되어 가동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온 구미동 195번지 하수종말 처리장을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철거하고 동 부지에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미동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코자함 ☐ 주요골자 가. 하수종말처리장 폐지 ○ 위치 : 분당구 구미동 195번지 ○ 면적 : 29,041.5m² ○ 최초결정일 : '95. 7. 7(건교부고시 제238호) 나. 고등학교 신설 ○ 위치 : 분당구 구미동 195번지 ○ 면적 : 18,742m² 다. 도로 변경(연장증가) ○ 위치 : 분당구 구미동 195-11번지 ○ 폭15m, 연장 55m → 76m	도시계획과	도시건설 위 원 회
1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 제안이유 ○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바로 파악하고 ,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 일 시 : 2008. 3. 12(수) 오전 10 : 00	의회사무국	본회의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15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	☐ 제안이유 ○ 2008. 2. 1일자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설립된 성남시청소년육성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추진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제17조 (임원의 선임 방법) 제3항에 의거 상임이사 선임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인적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성 명</th><th>생년월일 (연 령)</th><th>주 소</th><th>최종학 력</th><th>약 력</th></tr> </thead> <tbody> <tr> <td> 한 창 구 (韓 昌 求)  </td><td>49. 1. 1 (59세)</td><td>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8 느티 마을 309-803</td><td>연세대 행정대 학원 졸업</td><td>진) 중원구 청장</td></tr> </tbody> </table> 2. 주요 경력사항 ○ 1977.12. 5 ~ : 지방행정주사보 임면(성남시장) ○ 1991. 7. 1 ~ 1991.12.31 : 분당구 사회산업 과장(성남시장) ○ 1992.10. 1 ~ :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전출(경기도지사) ○ 1995. 8.10 ~ 1995.10.27 : 성남시 중원구 총무과장 전입(성남시장) ○ 1995.10.27 ~ 1997. 1. 9 : 보건사회국 사회 과장(성남시장) ○ 2002. 1. 1 ~ 2002.10.25 : 복지환경국 문화 예술과장(안양시장) ○ 2003.10.10 ~ 2005. 6. 3 : 문화복지국장, 행정 기획국장(성남시장)	성 명	생년월일 (연 령)	주 소	최종학 력	약 력	한 창 구 (韓 昌 求) 	49. 1. 1 (59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8 느티 마을 309-803	연세대 행정대 학원 졸업	진) 중원구 청장	체육청소년과	본회의
성 명	생년월일 (연 령)	주 소	최종학 력	약 력										
한 창 구 (韓 昌 求) 	49. 1. 1 (59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8 느티 마을 309-803	연세대 행정대 학원 졸업	진) 중원구 청장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 2005. 6. 3 ~ 2006. 3. 3 : 수정구청장(성남시장) ○ 2006. 3. 3 ~ 2006. 7.28 : 분당구청장(성남시장) ○ 2006. 7.28 ~ 2007. 4. 2 : 보건환경국장 (성남시장) ○ 2007. 4. 2 ~ 2008. 2.25 : 중원구청장 (성남시장) 3. 주요 상훈사항 ○ 1983. 7. 1 : 도지사 표창(경기도지사) ○ 1988. 9. 1 : 장관 표창 (내무부장관) ○ 1994. 3. 2 : 도지사 표창(경기도지사) ○ 1998. 9. 1 : 장관 표창(행정자치부장관) ○ 2004. 12. 27 : 대통령 표창(대통령) 4. 외국 시찰 및 수학 사항 ○ 1994. 10. 31 :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해외 연수(영국 등 4개국) ○ 1996. 11. 21 : 사회복지분야 해외연수(일본 등 3개국) ○ 2002. 4. 27 : 벤치마킹 해외연수(일본) ○ 2004. 8. 16 : 해외체육행정 견학 연수 (홍콩 등 3개국) ○ 2005. 3. 25 : GIS통합구축사업 벤치마킹(핀란드 등 2개국) ○ 2006. 12. 4 : 그린시티 해외홍보(독일 등 4개국)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16	성남시 장사시설 (장묘문화타운) 건립대책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	☐ 제안이유 ○ 성남시가 현 추모의 집 수용능력이 2009년 8월경 만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0,000기 규모의 제2추모의집(납골당)을 건립하고자 추진중에 있는바 ○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부지선정 부적정은 물론 친환경적 장묘문화 정책을 위해서 시정 질문, 업무청취,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최첨단 대형화 ‘시설을 건립토록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제2추모의집 50,000기 시설설치 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는바 ○ 성남시의회에 “성남시 장사시설(장묘문화타운) 건립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사시설(장묘문화타운)의 건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기 위함. ☐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복지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 활동기간은 2008년 3월 일부터 5월 일 까지로 한다.	영생관리 사 업 소	본회의